# 호주의 영유아 학대방지를 위한 입법적 동향 

송 영선

TIIIR 한국법제영궈원

## 지역법제 Issue Paper 16-16-(5)

# 호주의 영유아 학대방지를 위한 입법적 동향 

송 영 선

# 호주의 영유아 학대방지를 위한 입법적 동향 <br> Legislative Issues on Child Abuse Prevention in Australia 

연구자 : 송영선(전문연구원)<br>Song, Youngsun

2016. 11. 30. 

## 목 차

제 1 장 연구의 목적 ..... 5
제 2 장 호주의 아동학대 실태 ..... 7
제 3 장 호주의 아동학대 관련 정책 및 법제 ..... 11
I 아동보호 통합정책 및 추진체계 ..... 12

1. 아동보호 통합정책 ..... 12
2. 아동보호 추진체계 ..... 13
3. 아동 보호정책 추진체계 및 역할 ..... 15
ㅍ 아동보호 관련 일반 원칙 및 관련 법령 ..... 17
4. 일반원칙 ..... 17
5. 아동•청소년법 2008 ..... 17
6. 아동학대조사위원회 설치법 ..... 20
7. 아동 권리 보호 협약 ..... 22
제 4 장 호주의 아동학대 예방 및 감시제도 ..... 23
I. 아동학대 예방제도 ..... 23
․ 각주의 아동학대 감시제도 ..... 25
III. 아동의 안전 및 돌봄을 위한 교육 ..... 26
8. 기본원칙 ..... 26
9. 교육의 내용 및 목적 ..... 27
IV. 호주의 아동학대 관련기관 ..... 29
제 5 장 시사점 ..... 31
참고 문헌 ..... 33

## 제 1 장 연구의 목적

○ 호주 가족정책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분야는 아동복지로, 아동들 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 는데, 이는 이 기간 동안의 주변 환경이 아동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지대하며 나아가 그 영향이 사회 전반에 걸쳐 드러난다 는 이해에 뒷받침하고 있음.

○ 호주에서는 아동복지를 위한 장기기본계획 하에 아동의 학대 예 방, 학대발생시 신고 및 처벌, 사후 감시 등이 통합적으로 이루 어 지고 있음.

○ 연방국가인 호주의 경우 주법 뿐만 아니라 각주의 법에서도 아 동복지에 관한 계획, 아동학대 신고 및 처벌과 예방 및 감시에 대한 각각의 법을 제정, 시행하고 있는 바, 이에 대한 세부 내용 을 검토하여 선진적인 내용을 참고하여 우리의 관련 법제 개선 시 참고하고자 함.

## 제 2 장 호주의 아동학대 실태

○ 호주 보건복지부 산하 연구원의 신뢰할 수 있는 정보 및 통계에 따르면 호주에서는 아동학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.

○ 최근에는 소년원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가혹행위1) 책임자들의 처 벌을 촉구하는 항의시위가 일면서 가해자들에 대한 신속한 기소 및 처벌이 요구됨.

○ 호주 정부는 1910년대부터 70년대 중반까지 '아동학대' 혹은 '아 동 처우 개선'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호주원주민(에버리진) 자녀 를 부모로부터 강제로 분리해 백인가정에 입양시키는 원주민 동 화정책을 실시하여 수많은 비극을 양산함. ${ }^{2)}$

○ 이상의 역사적 배경에서 여전히 고통받는 원주민 인구밀집지역 에 대하여 아동학대 보고제도가 신중히 적용되어야 함.

* 호주 아동보호 관련 신고 건수는 각주 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 으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.
* 호주의 가정폭력(Domestic Violence)에 대한 대처방법

[^0]Table 2: Number of substantiations, states and territories, 2009-10 to 2013-14

| Year | NSW | VIC | QLD | WAc | SA | TAS | ACT | NT | Total |
| :--- | :--- | :--- | :--- | :--- | :--- | :--- | :--- | :--- | :--- |
| $\mathbf{2 0 0 9 - 1 0}$ | 26,248 | 6,603 | 6,922 | 1,652 | 1,815 | 963 | 741 | 1,243 | 46,187 |
| $\mathbf{2 0 1 0 - 1 1}$ | 18,596 | 7,643 | 6,598 | 1,907 | 2,220 | 1,225 | 636 | 1,641 | 40,466 |
| $\mathbf{2 0 1 1 - 1 2}$ | 23,175 | 9,075 | 7,681 | 2,759 | 2,139 | 1,025 | 861 | 1,705 | 48,420 |
| $\mathbf{2 0 1 2 - 1 3}$ | 26,860 | 10,489 | 8,069 | 2,915 | 2,221 | 1,035 | 720 | 1357 | 53,666 |
| $\mathbf{2 0 1 3 - 1 4}$ | 26,215 | 11,952 | 7,406 | 3,267 | 2,737 | 778 | 449 | 1,634 | 54,438 |

- 가정폭력은 호주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폭행의 한 형태로 규정되어 현재 호주 법률 및 사회규범은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 해자에 대한 보호 및 도움을 규정하고 있음.
- 폭행을 당하거나 협박 등에 시달릴 경우에는 바로 경찰에 신고 해야 하는데, 가정폭력을 한없이 방치상태에 놓아둠으로써 야기 될 수 있는 상황 등을 법이 개입함으로써 미연에 방지하거나 또 는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임.
- 신체적으로 폭행을 당하지 않았다하더라도 폭행의 위헙 및 공포 속에서 살고 있다면 반드시 경찰 또는 법원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,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 등을 열거하면,
$=$ Police Victims of Crime Co-ordinator/경찰
$=$ Domestic Violence Advocacy Centre/보호기관
= Chamber Magistrate(Local Court)/법원
= Solicitor/변호사
$=$ Dept. of Social Security/사회보장성 등등
○ 아동성폭행(Child Sexual Assault)
- 아동이 성폭행 피해자일 경우에는 바로 경찰에 신고해야 하며, 기 타 Sexual Assault Centre 또는 의료기관 등에 자문을 구하여야 함.
- 일단 경찰에 신고를 하면 경찰은 바로 본 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며 가능한 경우 가해자에 대한 형사기소 절차를 진행함.
- Police Victims of Crime Co-ordinator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 으므로 필요한 경우 접촉해야 함.

○ 호주에서 부모의 자녀체벌은 형법에 저촉되는 불법으로, 연약한 아동을 때리는 것 자체를 형법상의 죄로 규정하고, 이를 위반하 는 경우 벌금을 부과하거나, 형법에 의해 범죄자 취급을 함.

- 현재 호주의 사법체계에서는 아동 체벌은 아동 학대죄에 해당되 어, 일반 폭력보다 더욱 엄격하게 다루고 있음.
- 아동에게 잘못이 있어도 이는 체벌대상이 아니라 미성년자로서 보호대상이 됨.
- 따라서 아동이 매를 맞은 흔적이 발견되면, 이를 발견한 의사, 교사, 사회복지사는 이를 관계 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고, 의무 불이행 시 직무유기가 됨.
- 부모의 체벌은 경미한 사안의 경우 경고 혹은 훈방되지만 타인 에 의한 체벌은 중벌에 처하고, 부모의 경우도 체벌이 반복되면 자녀양육권 박탈, 접근금지 됨.

○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은 필요시 아동을 사회복지사나 일반가정에 위탁 양육하도록 함.

## 제 3 장 호주의 아동학대 관련 정책 및 법제

○ 호주는 연방법 체계와 주법 체계를 따르고 있으므로 주마다 조 금씩은 다른 법체계를 가지고 있음.

- 주마다 다른 수준이나 정도의 아동학대 현황 때문임.3)

○ 호주는 아동보호중재를 각 주정부 내 지역사회담당 정부부서의 의무를 법에 규정하고 있음.

- 특히 FaCSIA 를 통해 아동학대를 방지하고 조기중재를 실시, 예 방하는데 주력하고 있음.
- 호주정부는 이를 위해 직/간접의 다양한 아동학대방지와 예방프 로그램들을 지원, 육성하고 있는데, 도움이 필요한 가정과 지역 사회간의 제휴를 권장하는 아동조기지원대응 프로그램들, 아동 보호와 관련한 전문적인 활동이나 연구를 지원하는 국가아동보 호정보센터 프로그램들, 손주를 양육하는 조부모, 그 외에 육아 를 맡는 친인척에 관한 보육조사와 연구프로그램들 등이 있음.

○ 정부차원에서는 1990년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였고, 1991년 아동의 생존, 보호, 발달에 관한 세계선언에 서명하였으며, 1993 년부터는 아동학대의 예방을 위한 국가적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 하고 있음.

○ 호주는 아동보호 기본계획(2009-2020)을 수립하고, 부문별 세부실 행계획에 따라서 아동복지 개선에 추진하고 있음.
3) 특히 NT 지역은 원주민 인구의 밀집지역인데 이 지역의 아동학대 정의를 다른 주 들에 비해 높게 정의해 두고, 학대가 일어났을 경우 국가의 공권력으로 즉각적인 대처를 함. 원주민 사회의 문화적 특성상 특정 지역에서는 현대 호주 사회가 정의 하는 '아동학대’에 해당하는 요인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임.

## I. 아동보호 통합정책 및 추진체계

## 1. 아동보호 통합정책

$\bigcirc$ 아동학대 신고 접수율의 꾸준한 증가와 더불어 기존 아동보호 법령 및 체제의 한계에 대한 범국가적 우려 증가

- 매년 6 만 여건의 아동학대 건이 신고•접수되고 있으며 이는 90년대의 통계치에비해 2 배 정도 증가한 수치임.
- 아동보호에 대한 사회적 정의가 다변화 되고, 아동복지 및 안전 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율 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기도 함.

○ 아동학대 유형별 조사 결과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호주에서는 감(성)정적 학대 및 무관심/방치, 신체적 학대 등이 가장 일반적 으로 발생하는 아동학대 유형으로 파악됨.

- 유형별 아동학대 수치에서 성적학대 사례가 상대적으로 적게 일어난 것으로 집계된 데는 사건의 특성상 신고되는 빈도가 희박하고 사건의 조사 및 입증의 어려움이 작용한 것으로 분 석됨.

○ 아동보호에 있어 사고 발생 후 이의 조사 및 후처리를 통한 대응 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아동의 안전/복지/보건/행복 등의 중 요성에 대한 사전 홍보 및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됨.

○ 아동들의 안전 및 보호 의무가 관련법령의 제정 및 관련 정부부 처에 국한되어 부과되지 않고, 학부모, 지역사회, 기업 등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통념 조성
$\bigcirc$ 이에 따라, 아동보호에 초점을 맞춘 정부간(연방 $\Leftrightarrow ㅈ ㅜ \Leftrightarrow ㅈ ㅣ ㅂ ㅏ ㅇ), ~ ㅁ ㅣ ㄴ ~$ 관간(정부 $\Leftrightarrow$ 기업) 통합적 공조 운영체제가 수립됨.
2. 아동보호 추진체계

○ 호주에서 아동보호와 관련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준•주정부 관 할(Jurisdiction)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으나, 아동보호의 개념이 아동복지 및 안전으로 확대되면서 이의 정책수립, 시행, 지원 등 제반사항이 연방정부를 포함, 정부기관 전반에 걸쳐 통 합 관리 및 지원되는 방향으로 개선됨.

○ 따라서 연방정부, 준 • 주정부, 지방정부 모두 아동보호 및 가족 지원을 위한다양한 정책지원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, 아 동학대 및 각종 사고의 사전예방(교육) 및 사전중재(Early Intervention) 등에 힘쓰고 있음.

○ 호주 국내외 전문가들은 호주의 아동보호 통합적 정책을 수립할 때에 정부의 공중보건 모델 체제를 적용함으로써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제안함.

○ 공중보건모델(Public Health Model)에 따라 아동보호정책이 시행 되면 통합적인 가족지원 (예: 보건, 교육) 서비스가 우선적으로 제공되고, 아동 학대에 대응하여 보다 집중적으로 사전 중재 서 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,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해 부차 적 아동보호서비스(예: 특별보호명령, 특별보호센터 송치 등)가 실시되는 방향으로 운용됨.

- 공중보건 체제가 병원서비스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마찬가지로, 단순히 법령으로 아동을 보호하는 단계를 초월하

여 적극적인 아동의 안전보호 및 권익보장, 복지제공 등의 시 스템이 필요하다는 데 공공보건 모델을 도입하는 의의가 있음.

○ 현실적으로 호주 아동복지체제는 피라미드형 보다는 모래시계형 에 가까움.

○ 아동보호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아동보호서비스 종류 및 규모도 다양해지게 되고 이에 따라 모든 취약한 아동 및 가족들을 대상으로 아동보호 및 복지의 혜택이 돌아가는 것 이 현실적으로 어렵게 됨.

○ 공중보건모델을 아동보호시스템에 반영하게 될 경우 아동학대 및 방치 등이 발생하기 전 초기에 이를 중재하는 데 서비스의 우선순위를 두게 됨.

○ 또한 이러한 모델을 채택함으로써 정부부처 뿐만 아니라 아동보 호 전문가 그룹, 가족, 지역 사회 등이 함께 다양한 정책 및 법안 도입에 적극 참가하게하고, 그 시스템을 보완•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보호가 모두의 책임이라는 인식을 자연스럽게 전 파할 수 있음.

○ 아동보호 정책에 공중보건 접근법을 채택하는 궁극적 목적은 아 동학대 및 무관심을 줄이고, 취약한 가정 및 아동들에 대해 민관 이 모두 정책적으로 또 시스템적으로 가장 시의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.

○ 따라서 새로이 도입된 통합 아동보호 정책은 아동학대의 사전예 방 및 중재 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있음.

○ 아동보호정책이 정부간, 민관간 통합적으로 대응되고 있으나 아 동보호 법령안 입안 및 시행 의무는 여전히 준•주정부에 부여

되어 있으며, 연방정부는 주로 취약한 가정에 대한 각종 복지수 당 및 지원책 서비스 제공에 대한 의무를 짐과 동시에, 주요 국 가 프로젝트 시행 (정보수집 및 공유, 리서치 등)과 관련해서는 리더쉽을 발휘하는 구조로 운영됨.

## 3. 아동 보호정책 추진체계 및 역할

○ 부모 \&가정: 개별적으로 자기 자녀의 복지 및 안전 보호와 관련 한 정책의 의사결정 참여

○ 아동: 자신의 권익 및 안전의 보호와 직•간접적 관련이 있는 정 책 및 서비스에 대한 의사결정 참여

○ 지역사회: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개별 가족들이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들의 권익보장 및 안전 보호와 관련한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지원

○ NGO: 아동보호 서비스 제공, 정책수립 과정 참가, 아동의 안전 보호, 권리, 복지 관련 프로그램 및 정책의 적극 홍보

○ 지역기업: 가정친화정책 시행 등을 통해 부모들이 자녀들의 안전 을 보호하고 권익을 신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 및 다각도의 지원 제공

○ 경찰: 국선변호사 알선, 직접적 재정지원 등의 다양한 정책적 프 로그램 개발 및 지원

○ 지방정부: 청소년 가족복지센터 및 지역 인프라 시설활용 등을 통하여 아동보호에 취약한 가정을 중심으로 다양한 서비스 지원 및 프로그램 참가 독려

- 준•주정부:
- 아동학대 및 무관심에 의한 방치 등을 사전예방하고 통합적이고 다양한 아동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NGO 및 다른 서비스 및 정책 주체들에 대한 기금조성 및 통합적 서비스 제공 및 시 스템 운용
- 아동보호 체제 및 보호시설 서비스 제공 등의 보호관련 법령체 제(입안, 시행 등) 운용 의무
- 기타 의무사항
= 아동보호 대상 가족 및 유아들에게 심적 치료 및 지원서비스 제공
= 아동보호 관련 리서치 실시
= 출산 및 아동보건 서비스를 비롯한 각종 보건 및 교육 서비스 제공
= 경찰 및 사법 서비스 제공
○ 연방정부:
- 아동학대 사전예방을 포함, 아동보육에 필요한 통합적 지원 및 서비스 제공
$=$ 연방정부의 지원에는 연금, 가정수당, 아동수당, 세금환급을 포함한 각종 재정적 가정지원금의 제공이 주를 이룸
= 국민의료보험(Medicare: 무료), 고용지원서비스, 아동부모 지원 서비스, 가족관계서비스, 가정법원시스템 등의 가족지원 서비 스도 이에 해당
= 모든 주와 연계하여 병원, 학교, 주택, 장애인 보조 등과 관련 통합적 서비스 제공
= 취약한 아동 및 가정을 타겟으로 한 정신보건, 중대한 학대, 집중 부모서비스, 집중 고용지원, 독립 청소년 지원 수당 등 과 관련한 서비스 제공


## П. 아동보호 관련 일반 원칙 및 관련 법령

## 1. 일반원칙

○ 모든 법에서 '아동 최우선의 원칙'을 따르는 호주는 '의무 아동 학대 보고 제도'를 통해 호주 사회 안에서 더 나은 아동들의 복 지와 안전을 위하여 힘쓰고 있음.

## 2. 아동•청소년법 2008

○ 아동학대 신고제도를 의무화하여 아동을 보호하고 있고, 모든 종 류의 학대와 성추행, 정신적인 고통, 심각한 수준의 방임을 아동 학대로 규정하고 있음.

○ 연방법에 따라 아동학대 보고의무제도가 있지만 주마다 조금씩 다른 아동학대와 방임의 정의에 따라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자가 있음.
(1) 아동학대의 유형에 따른 개념정의

1) 신체적 학대

- 신체적 학대는 보호자가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적 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우발적 사고를 제외한 모든 행위 로 규정
- 신체적 손상이란 구타나 폭력에 의한 멍이나 화상, 찢김, 골절, 장기 파열, 기능의 손상 등을 말하며 또한 충격, 관통, 열, 화학 물질이나 약물과 같은 다른 방법에 의해서 발생된 손상을 포함.
- 여하한 이유에서도 생후 12 개월 이하의 영아에게 가해진 체벌은 학대로 간주

2) 정서적 학대

- 정서적 학대란 아동에게 가해진 신체적 구속, 억제 혹은 감금, 언어적 또는 정서적 위협, 기타 가학적 행위를 포함.
- 아동의 인격, 존재, 감정이나 기분을 심하게 무시하거나 모욕하 는 행위, 명백하게 아동에게 가해진 잔혹하고 학대적인 부당한 대우를 포함.
- 신체적 혹은 성적 학대에 대한 위협이나 위해 행위, 고의적 반 복적으로 아동에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, 아동에게 부 당한 노동을 강요하거나 상업적으로 아동을 이용하는 행위로 정의

3) 성적 학대

- 성적 학대는 성기나 기타의 신체적 접촉을 포함하여 강간, 성적 행위, 성기노출, 자위행위, 성적 유희 등 성인의 성적 충족을 목 적으로 아동에게 가해진 신체적 접촉이나 상호작용으로 정의

4) 방임

- 방임은 보호자가 고의적 반복적으로 아동에 대한 양육 및 보호 를 소홀히 함으로 인하여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혹 은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
- 방임에는 신체적 방임, 유기, 장기간 아동을 위험한 상태로 방치 하는 등의 부적절한 감독, 교육적 방임, 의료적 처치의 거부 등 의 의료적 방임, 아동을 격려하고 지지하지 않거나 비난하고 무관심한 정서적 방임 등
(2) 아동학대로 부터의 보호

○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

- 퀸즈랜드 주 아동 훈육과 관련된 가정과 학교의 처벌이 문제가 됨에 따라 호주에서는 1989년부터 아동에게 체벌을 가하는 것은 불법으로 정하여 이를 처벌하고 있음.
- 1989년에 제정되었던 아동 청소년법을 1993년 개정하여 아동학 대가 발생했을 때 특정 전문 집단이 보건, 지역사회서비스 당국 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함.
-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비교적 신속하고도 체계적으로 개입함.

○ 아동학대 신고제도

- DoCS는 아동학대 신고 및 NSW의 지원요청에 대해 대응해야 할 법적인 책임이 있음.
- DoCS는 아동학대 신고와 관련하여 즉각적인 안전상의 위협이나 위해 가능성이 있는지를 먼저 평가하고 만약 그렇다면 신고에서 제기된 즉각적인 안전문제들을 조사해서 위험이 어느 정도의 수 준인지를 결정하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어떤 조치들이 취해져야 하는지를 결정해야 함.
- 신고 접수를 위해 142 명의 전문훈련을 받은 사회 복지 사업원들 로 구성된 도움신고전화(Helpline)를 운영하고 있으며, DoCS에 최초 신고된 $95 \%$ 이상이 도움신고전화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 음.

○ 합동조사팀 운영

- 호주에서는 JIRT(Joint Investigation Response Team)라고 불리는 전담팀을 별도로 구성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함.
- JIRT는 주정부에 속한 아동보호 전문상담원(Child Protection Case Worker), 경찰과 보건전문가로 구성되어 효과적인 초기대응을 도모함.
- 아동학대로 신고된 사건 가운에 심각한 신체학대나 성학대 등 형사범죄로 입증될 만한 사건을 주로 다룸


## 3. 아동학대조사위원회 설치법

○ 아동학대 조사위원회 설치

- 호주 연방정부는 아동학대 문제를 조사하는 "연방특별조사위원 회"를 설치하여 아동관련 조직, 기관 및 단체가 아동보호책임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고 있음.
- 사회적 대책마련의 중요한 전기가 됨.

○ 아동학대조사위원회의 활동의 애로사항

- 아동학대의 객관적인 평가가 어려움(절대적 증거확보가 어렵고, 개인증언에 의존).
- 조사내용과 과정에 대한 위원회와 여론간의 조율이 쉽지 않음.
- 아동관련 기관과 관련 종사자의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배려하 여 종사자들의 사기저하, 활동에 대한 불신감 조성되지 않도록 민감한 주의가 요망됨.
- 아동관련 기관과 단체종사자들의 자격심사(기본적인 수준의 아 동지도자 윤리자격검사나 관리, 아동관련 단체가 적절한 (공공 피해)보험에 가입하였는가) 및 관련법 적용 강화 필요함.4)

○ 아동보호 서비스 제공

- 아동학대 여부를 판정하고 사례계획을 세우고 나면 아동보호서 비스가 제공되는데, 대부분의 아동보호서비스는 민간기관을 통 하여 제공됨.
- 아동학대 사례 중 아동의 안전에 위험하다고 판단되거나 부모가 아동의 안전에 위험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감독을 제공받 지 못하는 경우에는 아동을 가정으로부터 격리보호함.
- 아동의 격리 및 가정 복귀는 아동법원의 판결에 따라 결정됨.
- 부모와 격리된 아동은 시설에서 보호되기 보다는 주로 가정위탁 에서 보호됨.5)
-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아동보호서비스가 민간기관에 의해 제공되 는 반면,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교정교육은 주정부에 의해 제 공됨.

4) 최근 호주의 아동학대조사위원회 위원장 피터 맥클래렌은 향후 위원회의 과제로「아동학대조사위원회 설치법」을 개정하여 증언수집시 6 명의 조사위원 중 일부만 참여하거나,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비공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. 비밀 보장을 위하여 일정한 이슈에 대해서는 위원회 조사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현재의 규정은 개정되어야 할 것임(호주동아일보 2015. 12. 30.)
5) 뉴사우스웨일즈주에는 1 년에 평균 9,000 명의 아동이 가정위탁보호되고 있는데, 이 중 $50 \%$ 정도의 아동이 친인척에게 위탁보호되고 있음

## 4. 아동 권리 보호 협약

○ UN의 아동 권리보호 협약(UNCRC1989)

- 모든 아동은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를 받을 의무가 있으며, 가족, 사회 그리고 국가는 그것을 지향해 줄 의무가 있음.
- 상대적으로 약자인 아동들이 학대나 방임을 당할 경우 아동의 주변인들이 의무적으로 그 상황에 대해서 신고를 해서 처우를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은 바람직한 발전임.
- 아동보호는 우리의 미래에 대한 보호임.


## 제 4 장 호주의 아동학대 예방 및 감시제도

## I. 아동학대 예방제도

○ 블루카드제도의 도입6)

- 경찰 징계 정보를 근거로 아동대상 근무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위기관리제도임.
- 법적 근거에 따라 아동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아동에 대한 접근이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여 블루카드를 발급함.
- 아동대상 관련기관 복무자들이 범죄로 기소된 경우 아동•청소년 보호를 위한 즉각적인 조치가 취해지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함.
- 향후 발생 가능한 위기의 완화를 위하여 아동청소년 위기관리 전략을 개발 및 이행을 의무화함.

○ 블루카드제도의 내용

- 검사 : 경찰정보 및 기존의 징계정보에 근거하여 아동대상 근무 의 적합성을 평가하여 아동 보호 및 안전보장이 어려운 경우 사 전에 블루카드 신청자격을 박탈하고 아동관련 복무를 금지함. 무자격자의 블루카드 신청은 범죄행위로 간주되어 5년 징역 혹 은 최고 55,000달러의 벌금에 처함.
- 모니터 : 블루카드 신청자 및 소지자에 대한 경찰정보를 모니터

[^1]제 4 장 호주의 아동학대 예방 및 감시제도

하여, 정보변경시 카드발급 유보 및 카드취소. 즉각적인 아동보 호 조치를 취함.

- 블루카드 소지자가 의무사항을 준수하여 아동에게 안전한 환경 을 제공하도록 지도하고 검사함.
- 블루카드 피대상기관은 아동 및 청소년의 위리관리전략을 개발• 수행 관리해야 함.

○ 블루카드제도의 적용대상자

- 아동관련기관 종사자, 학부모 이외의 자원봉사자, 아동관련 서비 스 제공자, 아동관련 활동의 수행자는 필수(아동 청소년 및 아 동보호자 위원회법(Commission for Children and Young People and Child Guardian Act 2000)
- 아동 청소년 및 아동보호자 위원회는 서비스 제공자가 아동에게 제공한 서비스에 관한 민원을 접수•해결 • 모니터•조사하도록 기능함.
- 블루카드의 유효기간은 3년임.

○ 24 시간 Hot-Line 운영

- 주정부는 아동학대사례에 대해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Hot-Line을 운영하고 24 시간 신고접수를 받고 현장조사를 실시하며, 학대행 위자에 대한 교정교육을 실시함.
- 민간기관이 24 시간 Hot-Line을 운영하는 경우, 신고접수시 반드 시 주정부에 보고해야 하고, 피해아동 및 가족 등에게 상담 및 서비스를 제공함.


## ㅍ. 각주의 아동학대 감시제도

○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지원과 지방단위의 노력이 뒷받침 되고 NAPCAN과 같은 민간단체의 실질적인 활동을 연계하여 아동학 대에 대한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음.
$\bigcirc$ 퀸즈랜드 주

- 블루카드제(Blue Card System)는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직무나 활 동을 담당하는 고용인이나 자원봉사자들의 신원을 경찰 정보 등 과 연동하여 사전에 검증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함.

○ 뉴사우스웨일즈주

- 아동 관련 근무자나 봉사자를 대상으로 5년간 범죄 기록과 위법 행위 여부를 조사•점검함.
- 뉴사우스웨일즈주에 85 개의 지역사회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있 으며,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사례의 신고 접수 시 지역사회서비 스센터나 DoCS 공무원/경찰이 함께 하는 Joint Investigation Response Team에 조사를 의뢰하고 아동학대 사실여부를 사정함.
- 아동학대에 대한 사례판정 및 가해자에 대한 이후의 개입까지를 담당함.
- 아동, 청소년, 가족을 위해 다른 서비스나 상담을 받을 수 있도 록 지역사회 기관(CAPS, Anglicare, Dympna House 등)에 의뢰함.
- 가정폭력과 아동학대가 중복이 되는 경우 아동학대가 우선임.

○ 빅토리아주

- 아동대상 업무종사자에 대한 조사. 점검 실시(Working with Children Law 2005)

제 4 장 호주의 아동학대 예방 및 감시제도

○ 노던준주

- 아동대상 업무종사자로 검증되었음을 통지하고 황토색카드를 발급 (Ochre Card)

○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

- 주정부의 커뮤티니 사회통합부에서 유사한 조사제도를 수행
$\bigcirc$ 타스마니아
- 여타 주와 같이 제도개편. 2014. 7. 1~ 2016 아동관련 직무나 활 동 수행을 위하여 신규 등록하도록 함.

○ ACT

- 취약계층 대상 복무법(Working with Vulnerable People Law 2011) 으로 취약계층의 피해에 대한 위험과 방치를 예방하고 취약계층 대상 복무자를 등록 - 관리
- 대상자에게 등록번호, 이름, 주소 등이 포함된 문서를 교부함.

○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

- 블루카드와 유사한 점검제도를 시행


## III. 아동의 안전 및 돌봄을 위한 고욱

1. 기본원칙

○ 아동의 안전 및 보살핌에 대한 권리 및 인격적 존엄성 존중

- UN 아동보호 조약 서명국으로서 필요한 아동보호 서비스 제공, 지역사회 참가 장려 및 긍정적 성과 도출과 관련한 책무의 성 실한 이행
- 아동들의 학대 및 무관심한 성장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보장
- 모든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서 아동들의 이익이 최우선 고려되고 아동 및 가족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가할 수 있도록 장려

○ 아동의 안전 및 복지 개선이 국익과 일치함을 인지

- 아동의 안전 및 복지와 관련한 1 차적 의무는 가정에서 분담하며 지역사회와 정부기관이의 보호를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운용
- 아동의 보호의무 실행에 있어 부모, 가정, 제 3 자간의 파트너쉽 중시 및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•제공
- 아동들의 권익이 사회 구조적으로 유관기관들에 의해 통합 지원됨.
- 아동들의 권익 및 안전보호는 관련법령 및 정부 정책과 사전예 방(중재) 등을 통해 보호됨.

2. 교육의 내용 및 목적

○ 아동 및 청소년의 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의 판단기준 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함.

- 아동건강, 발달, 복지수준
- 최근 3 년 기준 아동구출 건 및 병원 외래기록 횟수
- 아동보호법령 위반 사례 통계치
- 아동보호시설 위탁 관리 건수
- 아동학대 빈도 감소

○ 아동들이 가정 및 지역사회에서 보다 안전하고 지원받는 생활환 경 조성

제 4 장 호주의 아동학대 예방 및 감시제도

- 아동과 가족들의 안전홍보 및 교육, 사전예방 프로그램 서비스 등에 대한 접근성 고취
- 아동학대 및 방치/무관심에 대한 위험요소 해소
- 아동학대 및 방치 피해 아동에 대한 안전 및 복지 서비스지원 제공
- 아동 성학대 및 착취의 사전예방 및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 감찰 및 지원서비스 제공


## IV. 호주의 아동학대 관련기관

○ 주정부 : 사회서비스부

- 호주는 주정부 사회서비스부(Department of Social Services) 에서 아동학대업무를 담당하고 있고, 산하에 지역사회서비스센터와 네트워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음.
- 연방정부의 주무부처는 아동학대예방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의 기금을 지원하고, 아동보호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전문적인 조사 연구를 실시하는 등 전국적 차원의 지원을 함.

○ 지역사회 관련기관

- 호주에서는 아동학대방지를 위한 지역사회 관련기관간의 협력체 계를 구축하고 있음.
- 특히 심각한 신체학대나 성학대 등 응급한 사례의 경우 현장조 사 단계에서 경찰과의 협력은 아동의 안전 여부에도 큰 영향을 미침.
- 호주 정부는 아동복지정책의 개선을 위하여 아동복지관련 혹은 건강관련 전문직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음.
- 이와 관련하여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전문직 중 하나가 바로 사 회복지직으로, 특히 소셜워커나 케이스 워커로 불리는 사회복지 관련 전문직들이 현장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음.

○ 전국아동학대방임예방협회(NAPCAN)가 설립

- 1987년 민간단 체인 전국아동학대방임예방협회(NAPCAN)가 설 립되는 등 비교적 근래에 이르러 활발한 개입이 전개되고 있음.

제 4 장 호주의 아동학대 예방 및 감시제도

- NAPCAN는 우선 아동학대가 사회문제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, 아동양육에 있어 지지적 행동을 격려하며 예방적 프로그램을 주도하고 지원하는 일을 담당 함.


## 제 5 장 시사점

○ 호주에서는 아동학대에 대처하는 보호정책 시행에 있어 법령 및 감시 등의 조치를 통한 수동적 자세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으로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아동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통합 적 보호체계를 구축하여 실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.

○ 호주의 아동보호에 대한 통합적 정책 시스템 구축을 통해 아동 보호가 정부만의 의무사항으로 인식되지 않고 개개 가정, 지역 사회 및 NGO 등의 관심 및 적극적 참여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범국가적 공감대가 정립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.

○ 호주 정부에서는 아동보호에 대해 보다 적극적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사회 구성원의 역할 확대를 통한 실용적 접근방법을 채 택함으로써 아동보호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, 관련 정책 및 예산 수립 시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추세임.

○ 아동보호 신고접수 건에 대한 유죄입증 절차의 정비 및 민관간 통합적 참가를 통해 아동학대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시설 확대 및 보호조치 등의 다양화를 통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체제가 확립되었다 평가할 수 있음.

○ 통합적 정책시스템 구축을 통해 아동보호에 대한 범국가적 관심 을 고취시키고, 연방정부 차원에서도 다각도의 가정지원책(재정 적 지원 위주)이 수립되었다는 점도 아동보호 및 권익신장 측면 에서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대응책이었다고 평가 될 수 있음.

○ 이상의 통합적 정책시스템 구축과 정부와 민간을 아우르는 참여 적 아동보호방안을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

관련법령 정비에 신고의무자의 확대, 아동학대 조사위원회의 기 능, 향후 지속적인 감시 및 예방교육 등의 세부내용은 부문별로 검토할 수 있을 것임.

## 참고 문 헌

강은영. 김희균, 아동학대의 실태와 학대피해아동 보호법제에 관한 연구, 한국형사정책연구원, 2015. 12.

서문희, 호주의 보육관련 법과 제도, 최신외국법제정보, 한국법제연 구원, 2013년 제2호.

장혜경 외 5 인, 주요선진국의 가족정책 비교연구, 경제인문사회연구 회 협동연구 총서, 2006.

정현주, 호주의 블루카드제 운영 현황 및 시사점, 한국교육개발원, 2016.

여성가족부, 해외 가정폭력방지 법. 정책 및 활동, 2013. 12.

Children and Young People Act 2008(A2008-19 Republication No 54)
ACT Government Community Services, Keeping Children \& Young People safe, 2014. 11.

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, Child protection Australia 2014-2015.

National Framework for Protecting Australia's Children 2009-2020
(https://www.dss.gov.au/our-responsibilities/families-and-children/publicatio ns-articles/protecting-children-is-everyones-business?HTML\#sec2_o utcome3)

Child abuse and neglect statistics
(https://aifs.gov.au/cfca/publications/child-abuse-and-neglect-statistics)


[^0]:    1) 2016. 7. 30. 노던테리토리 준주. 돈 데일 소년원(Don Dale Youth Detention Centre) 의 아동학대: 14 세 소년에게 복면을 씌우고 의자에 결박하여 가혹행위를 하고, 독방에 구금 학대함(한호일보 2016. 8. 1).
    1) 호주 사회에서 의무 아동학대 보고 제도를 신중히 다뤄야 해야 하는데 그는 호주 의 역사에서는 ‘빼앗긴 세대’라는 역사적 비극이 있기 때문임. 약 30 여 년 전 호주 정부는 '아동학대' 혹은 '아동 처우 개선’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원주민 가족들을 해체 시켜 그들에게 수많은 비극을 주었으며 아직까지도 그 역사 때문에 고통 받 는 원주민 가족들이 있음. 당시 수많은 원주민 아동들은 가족들로부터 떨어져야 하 는 아픔을 격었음.
[^1]:    6) 블루카드 제도는 퀸즈랜드 주에 사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게 하며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임. 상세한 내용은 정현주, 호주의 블루카드제 운영 현황 및 시사점, 한국교육개발원, 2016 참조; 아동 청소년 및 아동보호자 위원회법(Commission for Children and Young People and Child Guardian Act 2000) 참조.
